

『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」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공정성,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명 변경
-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,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2조)
-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, 제15조)
-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- 수탁기관의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, 제19조)
-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~제23조)

- 위탁사무 협약 공중의무 규정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제명을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성과평가 신설 등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사전검토와 기존 조례에서 모호했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, 수탁기관 선정기준,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사후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사전적정성 확보와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, 사후 책임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